

# 정 관

[사] 한국그린빌딩협의회

(2000년 08월 31일 제정)

(2001년 05월 18일 개정)

(2004년 06월 10일 개정)

(2007년 07월 11일 개정)

(2012년 06월 08일 개정)

(2014년 06월 05일 개정)

(2015년 06월 30일 개정)

(2016년 12월 27일 개정)

**(2022년 04월 04일 개정)**

##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협회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그린빌딩협회(KGBC : Korea Green Building Council)"(이하 "본 협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그린빌딩이란, 건축물의 설계부터 건축, 운영, 관리, 수선 및 해체까지 빌딩 전 생애주기에 걸쳐 인간과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원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한 건축물을 말하며, 본 협회에서는 국내 그린빌딩산업의 진흥 확대 보급에 기여하고, 녹색건축강국을 실현하며, 그린빌딩 관련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건설 문화를 창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협회는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지역 지부를 둘 수 있다.

## 제2장 사 업

제4조(사업) 본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그린빌딩 관련 조사, 연구, 자문, 지원 및  
정책건의 활동
2. 국제적 그린빌딩 인증제도의 운영 및 그린빌딩에 관심이 있는 전문가 양성  
및 경력관리
3. 그린빌딩 관련 실무교육 등 지식보급 및  
산학간 정보 교환과 산업기술 보급
4. 그린빌딩 관련 산업기술, 학술, 정책 등에 대한 국제 교류 협력
5. 그린빌딩에 관한 교육, 세미나, 연수 및 공모전 사업
6. 녹색건축과 장수명주택의 연구개발 및 인증업무
7. 건축물에너지효율 향상 위한 연구개발 업무
8. 그린 리모델링, 제로 에너지 건축 연구개발 업무
9. 협의회지 및 그린빌딩 관련 도서, 간행물의 발간
10. 회원의 복리증진 및 권익옹호를 위한 사업
11. 우수 그린빌딩관련 업체 및 전문인력 포상
12. 기타 협의회회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3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종류와 자격) 본 협의회회 회원은 본회의 목적과 사업의 취지에 동의하는 다음의 개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음의 절차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정회원: 회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회 승인을 받은 자로서, 종신회비 또는 당해연도 회비를 납부한 자
2. 준회원: 본 협의회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회원으로 가입한자 또는 정회원 중에서 당해연도 정회원 회비를 미납한 자, 정회원으로서의 활동이 미진하다고 인정되어 이사회회에서 준회원으로 결정된 자
3. 학생회원: 그린빌딩에 관심 있는 대학 및 대학원생 또는 본 협의회회에서 시행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자
4. 특별회원: 본 협의회회 목적과 사업을 특별히 지원하는 자로서 이사회회 승

인을 받은 자

#### 제6조(회원의 가입)

- ① 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본 협의회에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임원회의의 승인을 얻은 후 입회비를 본 협의회에 납부함으로써 정회원이 된다.
- ② 본 협의회 온라인 홈페이지에 가입한자는 준회원이 된다.
- ③ 그린빌딩에 관심이 있는 대학 및 대학원생은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재학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학생회원이 된다.
- ④ 본 협의회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중인 자는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학생회원이 된다.
- ⑤ 특별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본 협의회에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임원회의의 승인을 받아 특별회원이 된다.

#### 제7조(회원의 권리)

- ①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본 협의회 권익을 고르게 누리고 가질 권리
  2. 협회의 임원, 위원 기타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되는 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급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권리
- ② 준회원과 학생회원 및 특별회원은 제7조 1항 1호와 3호의 권리를 갖는다.

####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는 의무
2. 총회 및 이사회 등 본 협의회 기구의 결의사항 이행하는 의무
3. 회비 및 부담금의 납부의무
4. 본 협의회 명예를 존중하고 회원으로서의 품위 보존의 의무
5. 본 협의회가 요구하는 각종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이행할 의무

#### 제9조(회비)

- ① 회원은 입회 시 입회비를 납부하고 매년 연회비를 납부한다.

② 회원은 예기하지 못한 사업이나 행사의 집행을 위해 특별회비의 징수가 필요하다고 이사회에서 결정한 경우 특별회비를 납부한다.

③ 회비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하여는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권리의무의 승계) 법인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하였을 때에는 당해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제11조(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며, 본 협의회에 대한 모든 권리도 상실한다.

1. 본 협의회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나 본 협의회 명예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거나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사회에서 제명된 경우
2. 회비를 1년 이상 체납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3. 본 협의회에 탈퇴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제12조(회원의 자격정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기간 중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1.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권리행사 정지처분을 받았을 때
2. 이 정관 및 규정에 의한 회비 납부 기일 내에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제4장 임 원

제13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본 협의회는 다음의 임원을 두며, 임원은 본 협의회 정회원이어야 한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0명 이하
3. 이사 60명 이하(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2명

제14조(임원의 임기)

- ①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부회장, 이사,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단, 잔임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선하지 않는다.
- ④ 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본 협의회회의 업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 제15조(임원의 선출)

- ① 본 협의회회의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 ② 이사는 매기 최대 총 인원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신규 선임되거나 교체되지 않도록 조절한다.
-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 제16조(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본 협의회를 대표하고 본 협의회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회의 의장이 된다.
- ② 회장의 유고 시에는 부회장중 연장자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협의회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임원회의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⑤ 감사는 본 협의회회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감사하며,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보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제17조(임원의 보수)

- ① 회원 중에서 임원으로 선출된 자는 비상임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범위 안에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비,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장 총 회

#### 제18조(총회)

- ①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된다.
-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③ 정기총회는 매년 2월 중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 1. 이사회 결의로서 요구할 때
  - 2.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의안을 명시하여 요구할 때
  - 3.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④ 회장이 임시총회의 소집요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⑤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 또는 적절한 공지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인준 사항
- 2. 본 협의회에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자금의 차임에 관한 사항
-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5. 사업계획의 승인
- 6. 기타 중요사항

제20조(의결권 및 의결정족수)

- ① 정회원은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 ② 총회는 위임자를 포함하여 재적 정회원 5분의 1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서 의결한다.
- ③ 총회의 의안이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 회의록)

-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회의록에는 개최일시, 장소,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

석한 회원 2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6장 이 사 회

### 제22조(이사회)

-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 ②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 ③ 정기이사회는 매년 4회 개최하며, 임시이사회는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1.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연서로 의안을 명시하여 요구할 때
  2.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④ 회장이 임시이사회 소집요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⑤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5일전까지 문서 또는 적절한 공지 방법으로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 제23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선임 등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5.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6.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본 협의회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24조(의결권 및 의결정족수)

- ①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서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임과 해임

##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② 이사회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이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 제25조(서면결의)

- ① 회장은 이사회에 상정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제26조(이사회 회의록)

-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회의록에는 개최일시, 장소, 의사의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2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7장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제27조(분과위원회 설치)

- ① 본 협의회는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회원자격 심사 및 학문 연구 등 각 분야별로 담당 이사 또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약간 명의의 위원을 둘 수 있다.
- ③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 ④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 제8장 명예회장, 고문, 자문위원

### 제28조(명예회장)

- ① 본 협의회에 명예회장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 ② 명예회장은 본 협의회의 육성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중에서 총회의 결의를 거쳐 추대한다.
- ③ 명예회장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각 회의에 출석하여 중요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29조(고문)

- ① 본 협의회에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 ② 고문은 본 협의회에 공로가 있는 자 또는 그린빌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추대한다.
- ③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회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임하거나 각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30조(자문위원)

- ① 본 협의회에 각 분야별로 자문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 ② 자문위원은 그린빌딩에 관련된 학문이나 산업분야에 종사하는 유력인사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 ③ 자문위원은 회장의 요청에 따라 본 협의회에 업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한다.

### 제30-1조(자문위원회)

- ① 회장은 명예회장, 전임회장, 고문 및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회의를 열 수 있다.
- ② 자문위원회에서는 회장과 감사 선임 및 본 협의회에 주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제31조(여비회의비의 지급) 명예회장, 고문, 자문위원에게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장 예산, 결산, 회계 등

제32조(회계연도) 본 협의회는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3조(재정)

① 본 협의회는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교육사업 수익금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4. 각종 기부금
5.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6. 연구용역 및 사업 수익금
7. 인증업무 검토 및 평가업무 등의 수익금
8. 기타

② 본 협의회가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본 협의회는 회계연도 1개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②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발생하였을 때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

③ 예산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④ 본 협의회는 회장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5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장 사 무 국

### 제36조(사무국)

-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 협의회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및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③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11장 인 증 센 터

### 제37조(인증센터)

- ① 협의회내에 녹색건축물의 확산과 인증관련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인증센터를 둔다.
- ② 인증센터는 녹색건축인증본부와 에너지본부로 구성한다.
- ③ 인증센터 운영위원회를 5인 이내(회장, 감사1인은 당연직 포함)로 구성하여 매 분기별 센터 운영 상황 등을 점검하고 지도 감독하기로 한다.
- ④ 인증센터 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 제12장 보 칙

제38조(정관의 변경)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변경한다.

### 제39조(서류의 작성 및 비치)

- ① 본 협의회는 설립한 때 및 매 사업년도 말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본 협의회는 회원명부를 비치하고 회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본 협의회는 제21조 및 26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을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40조(해산)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의 달성 불능 등으로 본 협의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정회원 4분의 3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41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42조(준용규정)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이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